반대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이후 경찰 측은 지금까지 21명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상 공개로 인해 인권이 침해되고 그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토대로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제에 반대합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의자 신상 공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헌법 제27조 4항에서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며, UN 인권선언 제11조, 국제인권협약 중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제14조 2항도 피의자는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를 명시합니다. 아무리 강력 범죄자의 신상 공개가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권을 무시할 순 없습니다.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 생긴 피해 사례도 존재합니다. 2006년 제주 살인방화사건 용의자는 체포 후 신상이 공개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2012년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피의자의 사진이 공개되었으나 실제 피의자가 아닌 일반인이었습니다. 미디어의 파급력으로 순식간에 퍼진 개인정보는 오보 피해자의 삶을 파괴합니다.

둘째, 피의자 신상 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의 대상과 범위가 불분명하며, 범죄 예방 효과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특강법은 제1조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부터 최근 8년간의 경찰청범죄통계를 보면, 총 강력범죄 발생 수는 연간 약 2만6천여 건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미디어 관련 성범죄는 2011년은 2445건이었으나 2014년 7885건, 2018년 7290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제공한 최근 8년간의 재범률 통계를 보면, 강력범죄의 재범 건수는 연간 약 13000~14000여 건을 유지하며 전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즉, 공익을 위해 개정되었다는 현 정책은 실질적인 범죄 발생 예방과 재범 방지의 실효성이 없어 그 목적성이 불분명합니다. 대중의 호기심을 충족하고 분노의 대상을 특정하며, 대중의 정서에 부합하기 위한 포퓰리즘일 뿐입니다.

셋째, 위 두 근거는 피의자 신상 공개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함을 방증합니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으로, 헌법 제 27조 제2항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상 공개의 실효성을 입증할 수 없음에 따라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하며, 필요 이상으로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과잉 대응입니다.

저희 팀은 위의 근거로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치지는 못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피의자 신상 공개는 미디어의 자극적인 노출로 대중의 분노를 격양 시킬 뿐 실질적인 범죄 근절의 대책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실한 사법제도의 허점이 드러나, 기본권 제한과 보호의 모호한 경계로 인권을 재단하게 되는 등의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반대합니다. 이상, 입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